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3일,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박성훈)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종수)

가. 도지사에게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외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부여(안 제3조제3항·제4항 신설)

1) 검토의견

현행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이거나 그 외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에게도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통보</u>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제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교통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도시교통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정지역 내의 일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임.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군수는 도시교통정비계획(20년 단위), 중기계획(5년 단위) 및 연차별 시행계획(3년 단위)을 수립·시행해야 하고(현행법 제5조1), 제8조2)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및 제10조³⁾),

도시교통정비지역 관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 또는 일정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한함),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일방통행제 실시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음(현행법 제34조⁴⁾, 제36조⁵⁾, 제42조⁶⁾ 및 제43조⁷⁾).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소재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함)에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현행법 제49조8),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로·철도·공항·항만 건설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현행법 제15조9).

(이하 생략)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이하 생략)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이와 같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권한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데¹⁰⁾,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비교(현행 및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정안	
	지정권자	지정절차	지정권자	지정절차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현행과 동일
그 외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장·군수 요청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현행과 동일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도지사가 지정·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2025년 6월말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 중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은 동두천시, 과천시, 동해시, 속초시, 음성군, 진천군,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 생략)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11) 참고로,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23년 2월)에서 채택한 이양과제(총 57개) 중 하나임.

홍성군,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나주시 등 11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은 교통거점이거나 개발계획 및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통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광권 개발 등으로 교통유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임. (참고1. 참조)

현행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관계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에 따라 도지사에게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권한이 없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일정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관할 시·군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타당한 자치권 행사로 보이며, 자치권의 강화 및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목적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안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지역 즉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외의 지역인데, 여기서 ‘도시’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 범위 즉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한정하여 해석하느냐¹²⁾, 군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인구 10만명 이상의 군¹³⁾은 전자로 해석하면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갖지만, 후자로 해석하면 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없게 됨.

둘째, 개정안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아닌 지역의 관계 시장·군수는 현행과 같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요청 권한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과 마찬가지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가지는 도지사를 상대로 한 시장·군수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요청 권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시장·군수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공식적인 요청이 가능함.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현행법 제5조제1항), 시장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군수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하고 있음. 예를 들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시장 및 군수는 모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현행법 제5조·제8조·제10조),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시행 주체로는 ‘시장’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33조~제49조).

특히 현행법 제36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주체를 ‘시장’(군수는 해당 없음)으로 규정하고, 부과 대상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즉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군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13) 경기 양평군, 대구 칠곡군 등이 해당됨.

이에 시장·군수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요청 권한을 인정한다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모두를 상대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이나 지방분권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해 보임.

2) 국토교통부 의견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수단 활용을 통하여 통합적 교통관리가 가능할 것인 바, 개정안에 동의함.

참고 1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현황

□ 지정 연혁

- '88.04.21 : 교통부 고시 제88-11호(최초 지정)
- '04.06.22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8호
 - 법 개정('02년)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79개소, 교통권역 167개소로 개편
- '16.07.2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
 - 도시교통정비지역 84개소, 교통권역 219개소

□ 지정 현황

시·도	지정·고시 현황(84개소)	비고
특광역시 (8)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28)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 과천시	
강원(5)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 속초시	
충북(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 진천군	
충남(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7)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전남(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경북(8)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8)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원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밀출** :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11개소)

자료 : 국토교통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관계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도지사에게도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지정 절차와 같이 도지사를 상대로도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밖에 법률용어에 적합하도록 자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을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 ② (생략)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또는 관계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 ----- ----- ----- ----- -----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 ----- ----- -----

	<u>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u>	----- --. <u>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신 설></u>	④ <u>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다.</u>	④ ----- ----- ----- ----- ----- ----- <u>지정에 관한 사항</u> -----.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⑦ (생략)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국가통합교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u>지방교통위원회</u>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개정안과 같음)

<u>통 제 계 효 율 화 법」</u>	<u>의</u> - - - - -
<u>제110조에 따른 지</u>	- - - - -
<u>방 교통 위 원 회(이하</u>	- - - - -
<u>“지방교통위원회”라</u>	- - - - -
<u>한다)의 심의와 대</u>	-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공고 절차를 거쳐	- - - - -
주민과 관계 전문	-----.
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면 반	
영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8항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를 “지방교통위원회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 고시) ① · ② (생략)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 고시) ① · 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u>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신 설></u>	④ <u>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u>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⑦ (생략)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u>지방교통위원회의</u>----- ----- ----- -----.
--	---